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강화 〉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503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강화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10. 10.
3. 회 부 일: 2025. 10.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 선수·체육지도자·체육단체의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및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재징계요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관·단체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경우 봐주기 관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거나 행위의 위법·부당한 정도에 비해 징계 수준이 현저하게 낮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8제2항·제3항 및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강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의 임직원 등 관련자들의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그 기관·단체에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18조의8제2항·제3항 신설)
- 개정안은 기관·단체가 받은 징계요구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9제13항 신설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생 략)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징계요구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외부인사(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가 2분의 1 이상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구성

두고 있음. 대한체육회 및 산하 시·도 체육회, 시·군·구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 시·도 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장애인체육회는 법제상벌위원회를 두고 있음.

- 2024년 9월 9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불공정성에 대한 시정 권고를 받음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변경안]

기 존	변 경 안
제4조(구성) ①~②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	제4조(구성) ①~②항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u>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및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u> 위원을 선임하고, 기관별 추천인원은 체육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자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원 구성 현황]

구 분	추천기관	인 원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	3
학회/언론	한국체육학회(2), 한국체육기자연맹(1)	3
인권	국가인권위원회(2), 스포츠윤리센터(1)	3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3
스포츠계	대한체육회	3

자료: 대한체육회

-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 단체의 임·직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¹⁾, 이는 시·도 체육회 등 산하 단체들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또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선임에 의한 추천위원회를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제상벌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2025년 12월 개정 예정임.

○ 개정안은 이러한 체육단체 등의 개선노력에 맞추어 징계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징계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와 유사하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위원회도 민간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

1)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의 임·직원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대한체육회 정관」 제43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어 선임하고 그 결과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고 있음³⁾.

○ 스포츠윤리센터는 주요 체육단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현직 기관·단체장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단체에서 관계가 있
었던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추가될 필요가 있으며,

- 판례가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
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⁴⁾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해당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는 입장임.

3)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
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체육단체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9명 이상 15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대한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이 회장에게 위임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처 등 관계기관 및 체육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을 선임하고, 기관별 추천인원은 체육회와 주무부처가 협의하여 정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정관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위원 9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 시 여성과 장애인선수 출신이 재적위원수의 2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장애인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